

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4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박기재, 권수정, 김경영,
김경우, 김소영, 김제리,
김춘례, 김호진, 김화숙,
문병훈, 안광석, 오한아,
이영실, 이정인, 조상호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장기적인 휴원 등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, 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, 가정 내 영유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음.
- 이에 사회·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으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재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로 양육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양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양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에게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여 양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양육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, 돌봄의 혜택을 장기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.
3. “양육재난지원금”이란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양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대상)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로 한다.

제6조(지원 등) ① 시장은 양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양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및 「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양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, 지급금액, 지급기준,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7조(환수)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1081100000018

비용추계서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원상 팀장
이혜린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8.11

회신일 : 직접입력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한 재난으로 양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에게 양육재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제6조의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재난 지원비용

나. 전제

-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는 421,392명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
- 수급아동 1인당 200천원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

- 감염병 확산 및 중대한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1년으로 추계

라. 방법

-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≍ 84,278,400천원
= 200천원*421,392명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세입	-	-	-	-	-	-
소계 (a)		-	-	-	-	-	-
세출	양육재단지원금 (제6조)	84,278,400	-	-	-	-	84,278,400
	소계 (b)	84,278,400	-	-	-	-	84,278,400
□ 총 비용 (b-a)		84,278,400	-	-	-	-	84,278,400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 조도형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주 무 관 이해린
☎ 02-2180-7955
e-mail : lovelyynn91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제6조의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재난 지원비용

2. 세부추계내역

- 양육재난 지원비용 ≙ 84,278,400천원
= 200천원*421,392명

※양육재난지원금은 2020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

참고) 2020년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

- 사업 목적
 - 어린이집의 휴원 등으로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·양육 부담 완화 위해 한시적 지원금 지급
- 사업 내용
 - 수급아동 1인당 20만원을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현금 지급
- 사업 예산 : 76,950백만원(국비100%, 코로나19 긴급추경)